

대법원 2017도20424

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민유숙)은 2018. 5. 11. 전 산업은행장 강만수 피고인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배임)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, 피고인 강만수에 대하여 징역 5년 2월, 벌금 5,000만 원, 추징 88,400,000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7도20424 판결)

1. 사안의 내용

▣ 공소사실의 요지

- 피고인 강만수는 기획재정부 장관,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,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, 산업은행장을 역임하였고, 피고인 임우근은 한성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이며 극동수산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 피고인 강만수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임
- 피고인 강만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9. 11.경 지식경제부 국장에게 지시하여,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인 '바이올시스템즈 주식회사'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게 함(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) → ①
- 피고인 강만수는 산업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. 6.경 ~ 2012. 1.경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남상태에게 '바이올시스템즈'에 투자하도록 지시하여,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가 '바이올시스템즈'에 합계 44억 원을 투자하게 함[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배임)죄, 제3자뇌물죄수수죄] → ②

- 피고인 강만수는 산업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. 9.경~2012. 1.경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재영에게 자신의 종친이 운영하던 '원재건설 주식회사'가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하여, '원재건설'이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4억 8천여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함(제3자뇌물수수죄) → ③
- 피고인 강만수는 산업은행장 및 산은금융지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2. 3.경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내정된 고재호와 대우증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기영에게 지시하여, 국회의원 7명에게 합계 3,840만 원의 후원금을 대신 기부하도록 함(뇌물수수죄, 금융지주회사법위반죄, 정치자금법위반죄) → ④
- 피고인 강만수는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중이던 2008. 10.경부터 산업은행장 퇴임 이후인 2014. 9.경까지 피고인 임우근으로부터 '한성기업 주식회사'와 '극동수산 주식회사'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로, ① 현금 합계 7,500만 원, 미화 5,000달러, ② '극동수산' 소유의 골프장을 정회원 자격으로 20여 회 이용, ③ 미국, 아르헨티나 등 여행경비 합계 4,700여만 원, ④ '한성기업'의 법인카드 합계 1,500여만 원, ⑤ 자신이 설립한 투자자문 업체인 '파이어니어 인베스터스'에 자본금 10억 원을 투자하게 함[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알선수재)죄,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뇌물)죄, 부정처사후수뢰죄] → ⑤
- 피고인 강만수는 산업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. 11.경 국회의원 원유철의 부탁을 받고, 비서실장을 통하여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에게 합계 473억 3,400만 원을 부실대출하게 함[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배임)죄] → ⑥
- 피고인 임우근은 위 ⑤ 기재와 같이 2011.봄경~2013. 12.경 피고인 강만수에게 현금 등을 제공함(뇌물공여죄)

■ 원심의 판단

- 피고인 강만수 : 일부 유죄 → 징역 5년 2월, 벌금 5,000만 원, 추징 88,400,000원 선고
- ①, ②, ④, ⑥은 유죄, ③은 무죄
- ⑤는 현금 합계 4,000만 원을 교부받은 부분만 유죄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뇌물)죄,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알선수재)죄], 나머지 현금 부분 및 골프장 이용, 해외여행 경비, 법인카드 이용, '파이어니어 인베스터스' 자본금 유치 부분은 무죄
- 피고인 임우근 : 일부 유죄 → 징역 10월, 집행유예 2년 선고
- 현금 3,000만원 뇌물공여 부분만 유죄. 나머지 현금 및 골프장 이용, 해외여행 경비, 법인카드 이용 부분은 무죄

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상고의 요지

- ▣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, 검사는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

나. 판결 결과

- ▣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

3. 판결의 의의

- ▣ 원심의 판단 및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한 사례임